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

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제 1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<아 래>

번호	과세대상 소재지	지목	면적(㎡)	합산배제 여부	합산대상 개별종교단체명 (법인(주민)등록번호)
결정 사유					
※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6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					

끝.

발 신 명 의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	서명	검토자(직위/직급)	서명	결재권자(직위/직급)	서명
협조자 (직위/직급)	서명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	(시행일)	접수	처리과-일련번호	(접수일자)
우	주소			/ 홈페이지 주소	
전화	전송		/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	/ 공개구분	
					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